

전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363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4. 3. 20.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B(E생, 이하 같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9.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9.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555,48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555,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406조,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을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개인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개인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A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그 소 제기 이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B(전주지방법원 2022개회113700, 개시결정일 2023. 2. 7.)이 수계하고도 변론종결일까지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